『KB 국민연금안심(安心)통장』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KB 국민연금안심(安心)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출금이자유로운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으로 합니다.

제 4 조 입금제한

- ① 이 예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며, 국민연금 급여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 제 54 조의 2, 제 58 조, 동법 시행령 제 44 조, 민사집행법시행령 제 2 조(이하 "관련 법"이라 합니다)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합니다. 단,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대상금액 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.

제 5 조 거래제한

- ① 이 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,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예금은 통장자동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·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4 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·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제 6 조 이율적용

- ① 이 예금의 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이자가 적용됩니다.

제 7 조 세제혜택

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 수수료면제

- ① 이 예금으로 전월 중 국민연금 급여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 달 11 일부터 다음 달 10 일까지 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의 타행이체 수수료와 KB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신규시에는 이체실적에 관계없이 신규일로부터 익익월 10일까지 제 1 항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부 칙 이 약관은 2012.06.11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2.07.13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5.01.01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15.07.29부터 시행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